

<p>이상과 같이 質疑와 答辯을 끝내겠습니다.</p> <p>그러면 이상으로 1994會計年度 一般會計 消防本部所管 歲入·歲出決算에 관한 質疑 및 答辯을 모두 終結하겠습니다.</p> <p>質疑 및 答辯이 끝났으므로 決算案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러면 1994會計年度 一般會計 消防本部所管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1994會計年度 一般會計 消防本部所管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을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장·취급기준, 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극장, 카바레, 백화점 등 不特定多數人이 출입하는 장소의 客席, 通路 등의 기준, 條例 위반행위에 관한 過怠料 賦課基準 등을 條例에서 정하고 있습니다.</p> <p>이상의 條例 中에 이번에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 및 用途廢止 申告義務, 條例 第31條, 第35條第1項第2號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해서 市民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改正을 提案하게 된 主要理由는, 内務部에 사 추진 중인 消防行政 規制緩和 推進計劃의 일환으로 市民이 불편을 느끼고 安全management에 實益이 적은 規制事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改正하고자 하는 主要骨子는, 경유 200ℓ 이상 1,000ℓ 미만 등의 소량위험물 및 지정수량 10倍 미만의 능에·어폐류·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과 면화류, 대폐밥 등 特수가연물 등의 신고와 用途廢止 申告義務, 條例 第31條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이의 신고대만에 따른 過怠料 賦課 规定, 條例 第35條第1項第2號가 되겠습니다. 삭제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吴世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들, 本 改正條例는 서울市民에 대한 과도한 規制를 완화하고자 폐지하는 것이오니 금번 會期 中에 통과될 수 있도록 承認, 議決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提案說明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吴世根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된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委員會 回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특별시장(95. 10. 9) 나. 回附日字 : 95.10.10 다. 上程日字 : 제8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95.10.24) 2. 提案說明의 要旨
--	---

<p>가. 提案理由</p> <p>소방 행정 규제 완화 추진 계획(95. 2. 7)의 일환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 관리에 실익이 적은 소량 위험물(경유 200리터 이상 1,000리터 미만 등) 농예용 및 어폐류 양식장 난방 시설을 위한 위험물의 취급 신고 의무 등을 폐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p> <p>나. 主要骨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 관리에 실익이 적은 아래 위험물 등의 취급 신고와 용도 폐지 신고 의무를 폐지함.(안 제31조) ○ 경유 200리터 이상 1,000리터 미만 등 소량 위험물. ○ 저장이나 취급 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방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지정 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어폐류 양식장의 난방 위험물. ○ 면화류, 대폐밥 등 소방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배 이상인 특수 가연 물 2) 소량 위험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되므로 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20만 원) 부과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35조 제1항 제2호) <p>다. 參考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규 :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27조 2)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의 : 필요 없음 4) 기 타 : 1. 입법 예고(1995. 2. 20~3. 15) 결과 제출된 의견 없 습니다 <p>3. 檢討意見(専門委員: 鄭文孝)</p> <p>가. 現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는 소방법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동법 제14조(소방의 날 제정 운영), 동법 제15조의 제2항 및 제3항(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동법 제17조 제1항(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 동법 제27조(소량 위험물의 취급), 동법 제67조(화재 위험 경보), 동법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p>있습니다.</p> <p>○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2장 화재의 예방에서는 제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준, 제4조 주방 설비, 제5조 보일러, 제6조 난로의 관리, 제7조 벽난로, 제8조 건조 설비, 제9조 사우나 시설, 제10조 간이 끓이기 설비, 제11조 변전 설비, 제12조 발전 설비, 제13조 축전지 설비, 제14조 네온관 등 설비, 제15조 무대 장치 등의 전기 설비, 제16조 방전 가공기, 제17조 수소 가스를 넣는 기구, 제18조 불티 생기는 설비, 제19조 흡연 등, 제20조 불피움, 제21조 연기 불을 내는 원구, 제22조 화학 실험 등, 제23조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 등, 제24조 소방의 날 행사 ○ 제3장(위험물과 특수 가연 물의 취급)에서는 제25조 주택의 난방 용 위험물 저장소 설치 기준, 제26조 농예·어폐류 양식장의 난반용 위험물 저장소 취급 기준, 제27조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기준, 제28조 소량 위험물 기준, 제29조 품명 등이 다른 위험물, 제30조 특수 가연 물 기준, 제31조 소량 위험물 등의 신고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화재의 경계에서는 제32조 화재 위험 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 제한, 제5장 보착에서는 제33조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제34조 화재의 예방 조치, 제6장 별 칙에서는 제35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써, 6장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조례 제2장 화재의 예방과 제3장 위험물과 특수 가연 물의 취급에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불과 관련된 시설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위험물질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나. 消防行政規制緩和計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세계화와 개방화 정책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규제 완화 책의 일환으로 소방 행정 규제 완화 책이 95. 2. 7. 발표 시행되고, 	
---	--

<p>○ 내무부에서는 95. 2. 9. 각 시·도 화재 예방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p> <p>○ 서울시에서는 소방행정분야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개정안을 제정하여 95. 2.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50호로 예고 완료하여 소방행정규제완화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다. 條例改正 主要內容</p> <p>○ 현행조례 제31조는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를 규정하여 제1항에서는 소량의 위험물 등의 취급신고·용도폐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제3항에서는 시설을 양수한 사람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소형위험물을 취급신고와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폐지하고,</p> <p>○ 현행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과태료부과 규정은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의무가 폐지되므로, 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20만 원)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p> <p>라. 結 論</p> <p>○ 현행조례 제31조는 소방법에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위임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에는 실익이 적으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조항이 있습니다.</p> <p>○ 정부에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소방행정규제완화계획이 95. 2. 7. 발표되고,</p> <p>○ 내무부에서 95. 2. 9. 각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현재 서울을 제외한 14개 각 시·도는 95. 6. 14. 충청남도를 마지막으로 이미 개정 완료하여 소량위험물 등의 신고폐지를 단행한 바 있으며,</p> <p>○ 서울시에서도 본 조례개정안을 제정하여 95. 2. 20. 입법예고한바, 그 내용도 각</p>	<p>시·도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 소량위험물을 취급자의 신고의무제와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으로 보아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p> <p>.....</p> <p>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 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p> <p>이어서 上程된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 崔光雄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p> <p>○ 崔光雄委員 이것은 書面으로 答辯해도 좋습니다.</p> <p>아까 决算審查할 때도 우리 本部長께서 答辯하실 때 內務部에 過怠料 引上을 建議하셨다는 그런 答辯을 하신 部分이 있습니다. 모든 過怠料를 다 引上할 필요는 없고요, 이 條例와 마찬가지로, 改正條例와 마찬가지로 內務部에서 추진 중인 消防行政規制緩和推進計劃, 政府 전체에서는 行政 全 分野에 대해서 行政規制緩和 推進計劃이 施行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서울特別市消防本部에서도 細部實踐計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研究檢討한 部分들이 있는지?</p> <p>그리고 아까 本部長께서 答辯하실 때 內務部에 過怠料 引上을 建議한다고 하셨는데..... 나눠 보면 規制를 완화해야 될 部分, 말하자면 安全管理上 實益이 없는 部分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市民 便益을 위해서 條例라든지 規則을 改正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自治 特別市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內務部에 建議해야 될 內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部分들.</p> <p>그 다음에 좀더 그 동안 기준이, 過怠料라든지 기준이 未備해서 市民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部分,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部分하고 나눠서 研究 檢討한 實績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內務部에 종합적으로 建議하기 전에 우리 內務委員會에 사전에 報告를 해 주시면 우리 委員들하고 함께 論議해 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p>
--	--